

## 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4. 10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4. 10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2001. 4. 20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)

제안사유

○ 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의 상위법인 의료법 제62조가 2000. 1. 12일 삭제됨에 따라 부천시 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주요골자

○ “동조례 폐지”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제84회 임시회시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을 의결하였고, 상위법이 삭제되어 폐지됨이 타당함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

없 음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## 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제467호
의결년월일	2001. 4. 24 (제86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4. 1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 폐지이유

- 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의 상위법인 의료법 제62조가 2000. 1. 12일 삭제됨에 따라 부천시 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 주요골자

- “동조례 폐지”

 첨 부

- 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제8편 사 업 소

## 제1장 보 건 소

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[ 1974. 7. 11 ]  
조례 제130호

개정 1977. 2. 28 조례 제214호  
 1978. 3. 8 조례 제295호  
 1979. 2. 20 조례 제327호  
 1980. 7. 15 조례 제390호  
 1982. 4. 30 조례 제481호

제1조(조례) 이 조례는 의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 의료인에게 보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액) ① 촉탁의료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급 및 기말수당을 지급한다.

②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의한다.

제3조(지급일) 보수의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4조(보수계산) 촉탁 의료인이 해외에 여행함으로써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달의 보수는 일할 지급한다.

제5조(지급정지) 이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보조되는 국고보조액이 50% 미만인 연도에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 <1974. 7. 11 조례 제13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77. 2. 28 조례 제21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78. 3. 8 조례 제295호>

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1979. 2. 20 조례 제32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80. 7. 15 조례 제39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82. 4. 30 조례 제48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